G - 28 - 2016

요양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2016. 8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대한기계학회 서상호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안전실 김주구

○ 제·개정 경과

- 2010년 8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2년 5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6년 6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○ 관련규격 및 자료

- Health and safety in Care Homes, HSE, 2001
- KS S ISO 23601 안전 식별·피난 및 대피 계획 표지
-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2006
-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759호 「실내건축의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

○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6년 8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G - 28 - 2016

요양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요양시설 근로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일반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요양시설"이라 함은 심신이 미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요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(나) "챌판(Kicking plate)"이라 함은 계단의 디딤판 밑에 사이를 막아댄 널을 말한다.
 - (다) "사이"라 함은 디딤판과 디딤판의 공간을 말한다.
 - (라) "널(Plate)"이라 함은 디딤판 밑의 사이를 막는 판재를 말한다.
 - (마) "안전필름(Safety film)"이라 함은 유리의 파손을 지연시키고 파손 시 파편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폴리에스터 재질의 필름을 말한다.
 - (바) "도어 클로저(Door closer)"라 함은 문과 문틀에 장치하여 문을 열면 자 동적으로 문이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.

G - 28 - 2016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실내 환경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

(1) 바닥

- (가) 바닥재는 요구되는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,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. 바닥의 표면은 평탄해야 하며 어떤 돌출물도 없어야 한다.
- (나)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① 건축물 진입부분, 공용 복도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,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.
 - ②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라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,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KS L 1001)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③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하여야 한다.
- (다) 청소 중에는 미끄러짐 주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. 바닥재의 구멍이나 결함은 즉시 수리해야 하며, 수리 전까지는 결함 부위의 통행을 우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.
- (라) 바닥의 높낮이가 변화할 때는 난간대(Handrail)를 설치하여 통행인의 안 전을 도모해야 한다.

(2) 계단

- (가) 가파른 계단이나 원형계단, 챌판이 없는 계단은 바람직하지 않다.
- (나) 시설 내 이용자의 거동이 불편할 경우, 계단의 폭은 충분히 넓어야 하며 계단의 양 옆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.

G - 28 - 2016

(3) 창문

- (가) 추락방지를 위해 허리 높이 아래에 위치한 창문에는 안전필름을 부착하 거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.
- (나) 유리문이나 테라스에 면한 창문은 강화유리를 사용하거나 안전필름을 부 착하여 유리가 날카롭게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. 또한 충돌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식별 가능한 표식을 해야 한다.
- (다) 지상에서 2 m 이상에 위치하고 심신 미약한 시설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창문은 10 cm 이상 열려서는 안 된다.^{주1)}

주1)의 수치는 HSE Guidance의 Health and safety in Care Homes에서 인용하였음

(4) 문

- (가) 근로자 및 시설 내 이용자가 사용하는 문에는 복원력이 강한 도어 클로 저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.
- (나) <그림 1>의 예시와 같이 여닫이문의 경우에는 반대편을 볼 수 있는 투명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.



<그림 1> 창문이 달린 여닫이문의 예

G - 28 - 2016

(5) 승강기

- (가) 승강기는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.
- (나) 승강기의 사용은 승강기 제조사의 운행지침에 따라야 한다.
- (다) 자동으로 개폐되는 승강기 문의 경우, 너무 빠른 속도로 닫히거나 또는 너무 강한 힘으로 닫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(6) 화재안전, 피난 및 대피 방향의 표시
- (가) 근로자 및 시설 내 이용자의 화재 안전, 피난, 대피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피난계획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(나) 피난 및 대피 방향의 표시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"KS S ISO 23601 안 전 식별·피난 및 대피 계획 표지"의 규정을 참조한다.

5. 주방 및 세탁실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

5.1 주방

(1) 배치

- (가) 주방설비 주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 사용자가 부딪히는 위험성을 없애야 한다.
- (나) 운반용 카트, 뜨거운 음식, 식판 등의 운반을 고려하여 주방 내 통로 폭을 정하여야 하며 그릴이나 버너처럼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의 주변에서 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.
- (다) 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주변에서의 화기사용과 젖은 바닥은 주의하여야 한다. 칼처럼 위험한 주방도구를 이용하는 수작업에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.

G - 28 - 2016

- (라) 여닫이문은 통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.
- (마) 때로는 인접된 장비끼리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. 예를 들어 튀김요리를 하는 기름 냄비와 인접 배치한 싱크나가스레인지 위에 위치한 선반은 사고의 발생과 위험을 높일 수 있다.

(2) 바닥

- (가) 미끄러운 바닥은 주방에서 가장 빈번한 사고원인 중 하나이다. 주방 내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시공되어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.
- (나)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.
 - ②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,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KS L 1001)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다) 바닥에 무언가를 흘렸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.

(3) 설비

- (가) 모든 주방설비는 평평한 바닥 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동 가능한 설비는 확실한 멈춤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- (나) 분쇄기나 절단기 등 위험한 부분이 있는 설비의 안전장치는 사용 전 뿐 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다) 주방설비는 세척을 위해 분리 가능하여야 하며 세척 후에는 안전장치의 올바른 장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G - 28 - 2016

5.2 세탁실

(1) 세탁기

- (가) 요양시설의 세탁기는 근로자와 시설 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기 작동 중에는 투입구의 문은 반드시 잠금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 이 잠금 상태는 기기의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까지 유지되어야 한다. 투입구의 문이 위쪽으로 개폐 가능한 세탁기는 세탁 중 개폐가 가능하더라도 탈수 단계에서 투입구의 문을 열 경우, 작동을 멈추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있어야 한다.
- (나) 회전형 건조기의 투입구 문을 열 경우에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어야 한다. 건조기 내부에 잔존하는 보풀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 으로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제거해야 한다.
- (다) 세탁실의 내부가 고온다습할 경우에는 강제 환기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.

(2) 오염된 세탁물의 처리

- (가) 요양시설에서 오염된 세탁물은 일반적인 더러운 세탁물과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. 오염된 세탁물은 고무장갑을 끼고 방수 앞치마를 두른 후 제거해야 하며 별도의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.
- (나) 오염된 세탁물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65 ℃의 온도에서 10분 이상, 70 ℃의 온도에서는 3 분 이상의 세탁이 필요하다.^{주2)}
- (다) 오염된 세탁물을 처리한 후에는 항박테리아용 비누와 일회용 수건을 구비 한 세면대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.

주2)의 수치는 HSE Guidance의 Health and safety in Care Homes에서 인용하였음

G - 28 - 2016

6. 기타시설 및 난방설비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

6.1 욕실 및 화장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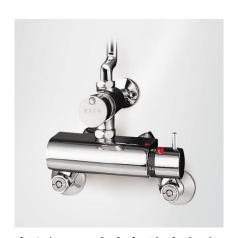
- (1)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이 물을 사용하는 장소의 바닥은 미끄러짐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.
- (2)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.
 - ②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,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KS L 1001)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3) 몸의 균형을 잃기 쉬운 이용자를 고려하여 <그림 2>와 같이 변기 주변 벽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4) 욕실의 급탕에 의한 화상의 위험과 대책
- (가) 요양시설에서 급탕온도가 44 ℃(샤워기는 41 ℃)를 넘으면 화상의 위험이 높아진다. 노약자, 정신장애나 학습장애가 있는 시설 내 이용자, 온도에 민감성이 떨어지는 근로자 및 시설 내 이용자 등 화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다.^{주3)}

주3)의 수치는 HSE Guidance의 Health and safety in Care Homes에서 인용하였음

(나) 화상사고는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는 도중에 흔히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<그림 3>의 예시처럼 자동온도조절기 (Thermostatic mixing valve)가 부착된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.



<그림 2> 변기 주변에 손잡이를 설치한 예



<그림 3> 자동온도조절기가 부착된 수도꼭지의 예

- (다)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화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내 이용자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. 이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이용자가 도움 없이 앉거나 설 수 있으며 홀로 목욕을 할 수 있는가?
 - ② 이용자가 온도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가?
 - ③ 이용자가 급탕이 지나치게 뜨겁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가?
 - ④ 이용자가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있는가?

G - 28 - 2016

- ⑤ 이용자의 이동을 돕는 장치 때문에 목욕시설에서의 움직임이 제약을 받는가?
- ⑥ 이용자가 관찰이 소홀할 경우 목욕시설 내에서 격렬히 움직이거나 온수 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가?
- 6.2 난방에 의한 화상의 위험과 대책
 - (1) 난방기기나 난방용 배관의 표면이 43 ℃를 넘는 경우,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.^{주4)}
 - (2)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온도를 낮추거나 덮개를 설치해 고온의 표면 에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. 특히 침실이나 욕실에 설치한 방열기는 주의를 요한다.

주4)의 수치는 HSE Guidance의 Health and safety in Care Homes에서 인용하였음